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목 차>

1.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김종욱
	담당부서 (과)	대중교통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상도		연락처	044-201-3826
	과장	김동준		이메일	kjunim0729@korea.kr

종합교통정책관

김상도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2.규제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3.위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6.12 ~ 7.2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범죄 예방 및 사고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7.규제내용	①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9.규제목표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관리 의무를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규정 준수율을 높이고 범죄 예방 및 사고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자동입력)	중기영향평가 (자동입력)	경쟁영향평가 (자동입력)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적용제외(7호)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반내용</th> <th rowspan="2">근거 법조문</th> <th colspan="3">처분내용</th> </tr> <tr> <th>1 차 위반</th> <th>2 차 위반</th> <th>3 차 이상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28의2. 법 제2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td> <td>법 제85조제1항 제23의2호,</td> <td>사업 일부 정지 (10일)</td> <td>사업 일부 정지 (20일)</td> <td>사업 일부 정지 (30일)</td> </tr> <tr> <td>28의3. 법 제27조의3 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td> <td>법 제85조제1항 제23의3호,</td> <td>사업 일부 정지 (10일)</td> <td>사업 일부 정지 (20일)</td> <td>사업 일부 정지 (30일)</td> </tr> </tbody> </table>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 차 위반	2 차 위반	3 차 이상 위반	28의2. 법 제2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3의2호,	사업 일부 정지 (10일)	사업 일부 정지 (20일)	사업 일부 정지 (30일)	28의3. 법 제27조의3 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3의3호,	사업 일부 정지 (10일)	사업 일부 정지 (20일)	사업 일부 정지 (30일)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 차 위반	2 차 위반	3 차 이상 위반															
28의2. 법 제2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3의2호,	사업 일부 정지 (10일)	사업 일부 정지 (20일)	사업 일부 정지 (30일)															
28의3. 법 제27조의3 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3의3호,	사업 일부 정지 (10일)	사업 일부 정지 (20일)	사업 일부 정지 (30일)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5781호 2018.9.18. 공포 2019.9.19. 시행)
- '19.9.19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
-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관리의무를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기준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규정 준수율을 높이고, 범죄 예방 및 사고 상황에 대해 명확한 파악이 가능해지도록 유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유지안) 영상기록장치 설치·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없음
- (규제대안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 「별표3」에 처분근거 마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입법예고시 의견반영	

3. 규제 목표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 「별표3」에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규정 준수를 유도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여객자동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안전사고 원인 규명 등 명확한 상황과약을 위해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등 과약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 시 처분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에서 운송사업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
④ 대상 업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⑤ 예비분석내용	<p>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에 약 4천여개의 버스운송사업자, 약 16만개의 택시 운송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 포함)가 있으며 운송사업 종류별로 개인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하게 분포. 이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 <p>② 유사사례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안전법 제55조에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 중이며, 관련 내용 위반시 동법 시행령 「별표9」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수사업자의 규정 준수를 유도 중 -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관련 규정도 실효성 확보 및 사업자의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처분기준 마련 필요 <p>③ 차등화 대상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관리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차등하여 적용할 필요가 부족
⑥ 차등화적용 여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된 규제로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차등화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영국>

런던의 시내버스는 스피드 돔 카메라를 내부 감시용으로 전면과 중간 그리고 후면에 3대, 전면과 후면 주시용 2대 그리고 측면 감시용 2대를 포함해 총 7대를 장착하여 운영 중이며 이층 버스의 경우 2층 내부 감시용 2대를 더 포함해 총 9대의 카메라를 장착해 운영

<스웨덴>

당초 정부기관이나 군부대 등 특수시설 위주로만 설치됐던 보안감시시스템(CCTV)이 1998년과 2013년 두 차례 걸친 법 개정 이후 학교, 법정,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은행, 주차장, ATM, 일반 매장으로까지 설치 확대

○ 타법사례

영상기록장치와 성격이 유사한 운행기록장치와 관련하여 장착 의무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 상
1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 1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4. 법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 2항제10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 법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 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 작한 경우	법 제65조제 1항제3호의2	100만원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여객자동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후 상황 파악 등 사업자 입장에서 편익이 크므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규제 차등화 방안

-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로 업체규모별로 해당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여객법에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고 내용을 구체화 하여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여객법령에 따라 자동차 정비는 운송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상·하반기마다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의무 준수 여부를 병행하여 관리감독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비용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

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개정내용을 구체화

2. 향후 평가계획

- 지자체 및 버스연합회와 협력 등을 통해 운수사업자의 여객자동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3. 종합결론

-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관리의무를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기준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규정 준수율을 높이고, 범죄 예방 및 사고 상황에 대해 명확한 파악이 가능해지도록 유도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